

[사 건 명] 핵심 2016-20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5.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과 같은 반 학생으로 2016. 4. 27. 어학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와서 □□□이 거울을 보러가고 있는데 □□□과 청구인이 서로 마주치자 □□□은 청구인의 몸짓을 보고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을 밀자, 청구인도 □□□을 밀었고 □□□이 책걸상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에 화가 난 □□□이 청구인을 쫓아갔으나 청구인 도망가자 □□□은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물을 마시러 나갔고 □□□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5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청구인을 발견한 □□□이 청구인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았고, 이렇게 목을 잡힌 청구인도 □□

□의 목을 잡고 □□□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과 □□□의 행동에 대해서 2016. 5. 13.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각 서면사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참고로 청구외 □□□도 같은 날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서면사과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불복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6. 5.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6.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2016. 4. 27.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정확히 처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피해자인 청구인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상처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2016. 4. 28. 담임교사와 면담하는 중 □□□의 모친도 같이 만났고 이후 사과편지와 문화상품권, 약을 받았으나 해결방법이 없어 다시 돌려주었다.

다. □□□이 학급 내에서 청구인의 흉터와 치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을 원하며, 청구인은 정당방위로 한 행동이므로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6. 4. 27. 사안 발생 직후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두 부모에게 연락하였으며, 4. 28. 양측 부모가 만난 경위를 확인하고 □□□ 측에서 청구인의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귀가하였으나, 4. 29. 청구인 학부모가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하여 4. 27. ~ 5. 3. 까지 사안 조사를 하고 5. 4.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안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나. 결과통지서의 오류(결과통지서의 조치원인란에 “□□□이 청구인의 의자를 밀자” 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이 청구인을 밀자”의 오기임)를 인정하지만, 이는 관련법령 및 상부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미 발송한 결과통지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재통지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재오류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다. □□□이 먼저 청구인을 밀기는 했으나, 서로 싸워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조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같은 반 학생이고, 평소 친하게 잘 지냈으며 가끔 서로 장난도 치는 사이였는데 2016. 4. 27. 어학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와서 □□□이 거울을 보러 가고 있는데 청구인과 □□□이 서로 마주쳤고 이 때 청구인의 몸짓을 본 □□□은 가끔 청구인이 □□□을 놀리는 것(청구인이 □□□에게 신데렐라에 빗대어 “김데렐라”라고 부르거나, “거울을 봐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식의 농담을 한 사실)이 생각나서 이 당시에도 청구인이 □□□을 놀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이 청구인의 몸을 먼저 밀었고, 이에 청구인도 □□□을 밀어 □□□이 책걸상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이 청구인을 쫓아갔으나 청구인이 도망가자 이에 □□□은 더 이상 청구인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 2) 이후 청구인이 물을 마시러 나갔고 □□□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5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청구인을 발견한 □□□이 조금 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청구인이 □□□을 밀어서 넘어지게 한 일)로 화가 나서 물을 마시고 있던 청구인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자, 청구인도 □□□의 목을 잡고 □□□을 밀쳤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의 긴 손톱 때문에 목과 팔에 상처를

입었고, □□□도 신체의 일부가 벽에 부딪쳤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사실조사가 정확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 □□□이 청구인의 몸짓을 보고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착각 하고 청구인의 몸을 밀었다는 사실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도 결과통지서상의 조치원인란의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청구인의 몸을 밀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밟는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인정된 사실에 비추면, 사안의 발단은 □□□의 착각 때문에 □□□이 청구인의 몸을 밀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청구인의 몸을 밀친 행위는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 폭행행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청구인도 화가 나서 청구인이 □□□의 몸을 밀친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 역시 □□□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로서 마찬가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오로지 청구인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며, 최초 □□□이 청구인의 몸을 밀었는지, 청구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밀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건대,

- (1) 우선 정당방위라 함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그 정당방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부당한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 행해졌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과 □□□은 2016. 4. 27. 어학실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의 착각으로 인하여 □□□이 먼저 청구인의 몸을 밀치는 행위가 있었고(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의 폭행행위임), 이러한 □□□의 행위가 종료된 후 청구인도 화가 나서 □□□의 몸을 밀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 역시 청구인이 □□□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가한 행위로서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부당한 침해행위가 종료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기야 어찌되었든 □□□이 청구인의 몸을 밀친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청구인의 몸을 밀친 부당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동기가 무

엇이든 상관없이 청구인이 □□□의 몸을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당시 서로간의 몸을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후에 있었던 행위, 즉 화장실 앞에서 □□□이 청구인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목 부분을 잡자, 청구인도 □□□의 목을 잡고 밀치는 행위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이 목을 잡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방법과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정도의 행위에 그쳐야 할 것인데, 당시 목격자 학생의 진술과 청구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본 건 구술심리에서 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청구인의 목 부분을 잡자, 청구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의 팔을 뿌리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도 화가 나서 □□□의 목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몸을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위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 서로 싸운 것이라고 보고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처분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